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김종무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95호
- 나. 제 안 자 : 김종무 의원(찬성의원 21명)
- 다. 제안일자 : 2019년 01월 31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02월 07일

2.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르면 정책연구결과를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나, 관련 조례에는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일관성 없는 용역결과 관리로 인하여 중복·유사 용역 발주, 용역 결과 부실 및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

기업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을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 및 활용도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3.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최종 결과물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비공개 가능한 대상의 기준을 명시함(안 제5조).
- 정책연구용역 공개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본청과 소속기관,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제정안 취지와 필요성

- 서울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는 각종 정책개발과 주요현안 추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조사·검사·평가 등의 다양한 정책연구용역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일관성 없는 관리와 원활하지 못한 정보공유로 인해 유사·중복 용역 수행은 물론, 정책연구용역 성과물에 대한 활용도 저하 등으로 예산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제54조제2항).

- 그러나 서울시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를 언제,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최근 5년간 중앙·지방정부와 공직유관단체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3만 3,985건) 중 절반 이상(52.6%)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도 연구과제명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¹⁾
- 이에 제정안은 정책연구용역 최종결과물을 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유사·중복 연구 방지 및 연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발의되었음.
-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연구 내용의 유사·중복과 활용여부에 대한 원활한 정보 공유와 검증을 통해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2018.10)

다. 세부 내용 검토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설치한 출자·출연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 경우 서울시 본청과 소속기관, 5개 공사·공단, 18개 출자·출연기관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됨.
-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제4조).
- 일반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조례에서 별도의 해석 규정을 두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의 정의를 둘러싼 법률과 조례의 용어 차이는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하며, 각각의 용어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포함하는 적절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투자·출연기관을 “공공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등에 관한 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책·시책·사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정책연구와 관련된 ‘정의’ 규정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외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행정운영업무 편람」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2조(정의) "입법정책 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학술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의 정책 수립개발이나 사업 지문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그 밖에 일반용역은 제외한다.

- 일반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함(국민권익위원회, 2018.10).
- 또한, 정책연구용역에는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의 ‘학술용역’ 정의와 같이 기술·전산·임상연구와 설문 조사 등의 일반연구는 제외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 바, 제정안과 같이 기술·응용과학 분야를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2) 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안 제3조)

- 안 제3조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과 시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정책연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구체적인 시스템의 명칭과 세부적인 시행방법 등은 시장에게 위임하였음.
- 이와 같이 공공기관과 시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상의 ‘정보소통광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별도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공공기관과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과 기술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는 별도로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투자·출연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서울시의 관리시스템에

통합 관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

3)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안 제4조)

- 안 제4조는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제1항).

또한, 서울시 본청과 소속기관은 '정책연구시스템'과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²⁾(제2항) 그 외 서울시가 설치한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제3항).

- 현행,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³⁾에서는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외 원칙) ①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의 청구없이도 주요 결재문서 등의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한다.
- ③ 공개되는 정보는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관리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한다.
- ④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결과

서울시를 포함한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신속하게,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방법을 특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나,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조례가 이미 시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과의 중복성·실효성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할 것임.

4) 비공개 대상 등(안 제5조)

- 안 제5조는 비공개 대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4)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제1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또한,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되, 보류의 대상과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2항).
- 이 같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명시하는 것은 공공연한 공개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거나, 비공개대상정보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해 비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

5) 평가 등(안 제6조)

- 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관에 대해 정책연구용역 공개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정책연구용역 공개와 경영평가를 연계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적극적인 공개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다만, 제정안은 18개 출자·출연기관에만 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서울시 본청과 소속기관, 그리고 5개 공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라. 종합의견

- 그 동안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제도가 미흡해 중복·유사 용역 발주,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연구결과를 언제, 어디에 공개해야 하는지 공개방법 등이 부재하여 일관성 없이 관리되어 왔음.
- 이에 제정안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 제고, 유사·중복 연구 방지, 연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음.
- 이를 통해,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성과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해 시민 등에 공개방법을 특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나,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조례가 이미 시행중에 있어 중복성·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 아울러, 정책연구용역 공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와 활용, 활용상황의 점검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함.

전문위원	연락처
주우철	02) 2180-8054

구 분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목적		농수산물 유통원활 및 적정가격 유지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
설립일		'84. 4. 10.	'89. 2. 1.	'16. 12. 21.
대표자 (임기)		김 경 호 (59년생) (19. 9. 20. ~ 21. 9. 19.)	김 세 용 (65년생) (18. 1. 1. ~ 20. 12. 31.)	박 진 섭 (64년생) (16. 12. 21. ~ 19. 12. 20.)
조 직		2실, 5본부, 1센터, 1지사, 27팀	6본부, 5실, 1원, 16처, 1단, 64부, 12센터	3본부, 4실, 4처, 2지사, 1센터, 1소
임원 현황	정 원	11명 (비상임이사 포함)	15명 (비상임이사 포함)	11명 (비상임이사 포함)
	현 원	9명 (비상임이사 포함)	11명 (비상임이사 포함)	11명 (비상임이사 포함)
정원내	정 원	298 (임원 포함)	820 (임원 포함)	280명 (임원 포함)
	현 원 (결 원)	292 (-6)	826 (6)	275명 (-5)
	%	97.3%	100%	98.21%
정원외	무기	48	450	-
	기간제	17	49	17
	단시간	-	-	-
자본금	수 권	10,000억원	80,000억원	10,000억원
	납 입	8,206억원	58,404억원	3,584억원
'19 예산		1,414억원	49,908억원	2,285억원
'19 市 출자금		-	4,667억원	-
주요 사업		도매시장(가락,강서,양곡) 관리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도매 시장 거래질서 확립 - 유통 증시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유통정보 수집·전파 및 안전성 관리 - 현대화사업 등 시설개선 및 관리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업 실현 - 시민의 삶을 지키는 주거복지사업 - 주거복지에서 공약으로 복지개념 확산 -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기여 도시재생 선도기관 위상구축 - 서울형 도시재생 실현모델 구축 및 실현 -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개발로 지역활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 지역냉난방 공급 · 주택 가구수: 26만 가구 · 건물(냉방): 410개소(190) 미활용열 수열 증대 - 부천GS과워, 서남 물재생센터 하수열·연료전지 발전폐열, 방화 연료전지 발전폐열, 별내에너지(주) · 수열량: 125만 Gcal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 운영현황 : 제1,2,3센터 운영 - 규모 : 1,300개교 공급가능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 가락물 상권 활성화 여건 조성 -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추진	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관리 - 497개 단지 194,662세대('18년말) '19년 임대주택 공급 : 13,852호 - 건 설 형 : 2,352호 - 매 입 형 : 5,000호 - 입 차 형 : 4,500호 - 공공지원 : 2,000호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태양광 주택 122,000가구 보급 -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 등 태양광 발전소 안정적 운영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 -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 도시기반 조성 사업 -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사업
		농수산물 거래목표('19년) - 일반농수산물 : 3,131천톤 '18년 거래실적 - 일반농수산물 : 3,070천톤	'19년 분양주택공급 : 642세대 '19년 택지신규공급 - 8개 지구(고덕강일, 향동, 오금 등) - 84필지 396,487㎡ *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자숙기능시설용지 등	시민참여 및 에너지복지 사업 등 - 지역단위 에너지생태계 육성 사업 - 시민협력 및 에너지복지사업 - 국내외 지자체 협력 사업

2. 서울시 출연기관 현황 : 18개 기관

구 분	의 료 원	연 구 원	산 업 진 흥 원	신 용 보 증 재 단	세 종 문 화 회 관	여 성 가 족 재 단	
설립 목적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해 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질향상과 보건의료사업 발전에 기여	-시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전문적 조사 연구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동을 원활히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실질적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설립 근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연구원육성조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설립일	'82. 9. 30.	'92. 10. 1.	'98. 3. 31.	'99. 6. 7.	'99. 7. 1.	'02. 1. 10.	
대 표 자 (임기)	김민기 (63년생) (18. 6. 1. ~ '21. 5. 31.)	서왕진 (64년생) (17. 4. 28. ~ '20. 4. 27)	장영승 (63년생) (18. 11. 1. ~ '21. 10. 31)	한종관 (58년생) (18. 9. 21. ~ '21. 9. 20.)	김성규 (63년생) (18. 9. 21. ~ '21. 9. 20.)	강경희 (59년생) (16. 3. 7. ~ '19. 3. 6.)	
조 직	4부 1사업단 9센터 25진료과 4실 21팀 1연구소 1위원회	감사실 1본부 6실 3센터	1실 7본부 32팀 (31팀, 1센터)	2부문 2실 5부 1센터 / 4지역본부 18지점 1센터	3본부 1실 15팀 9예술단	3실 8팀	
정원내	정원 (무기계약 312명 포함)	223명	431명	347명	351명	111명	
	현원 (무기계약 304명 포함)	213명	423명	339명	264명	108명	
정원외	무기	-	-	-	153명	-	
	기간제	121명	68명	15명	61명	35명	3명
	단시간	-	4명	2명	-	-	
이 사	정원	13명	15명	15명	8명	15명	21명
	현원	10명	12명	5명	8명	13명	11명
감 사	정원	1명	2명	2명	1명	2명	2명
	현원	1명	2명	1명	1명	1명	2명
'19 예산	본 예산	1,865억원	387억원	1,696억원	1,227억원	520억원	128억원
	추경예산	-	-	-	-	-	-
시 출 연 기 금	~'18 (누적액)	661억원	2,848억원	3,904억원	3,769억원	4,521억원	866억원
	'19	186억원 (보조금)	298억원	531억원	66억원	328억원	89억원
주요 사업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인, 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 의료정책의 수행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 의료사업	-연구 사업 · 자체 과제 · 수탁 과제 · 협약 과제 -공개학술행사 -국내외 협력사업	-원스톱 청원지원을 통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국내외 판로지원을 통한 기업매출증대 지원 -기업인재 양성 및 채용지원 -R&D지원 및, 지식 재산화 지원 등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에너타운 활성화 및 우수콘텐츠 육성 등 콘텐츠산업활성화 -DMC, 마곡, G밸리 등 산업거점 기반조성 및 거점별 활성화	-신용보증지원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세종문화회관 운영 -공연 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보급 -문화예술 관계 자료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 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법인의 운영보존 자금의 적립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서울시 위탁사업 -기타 문화시설운영과 문화행사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여성가족 정책 연구·개발 -여성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 활동 강화사업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등	

구 분	복 지 재 단	문 화 재 단	시립교향악단	디 자 인 재 단	장 학 재 단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설립 목적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설립 근거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민법32조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평생교육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설립일	'03. 12. 31.	'04. 3. 15.	'05. 6. 1.	'08. 12. 16.	'09. 1. 8.	'15. 3. 12.	
대표자(임기)	홍영준(74년생) ('18. 9. 21.~ '21. 9. 20.)	김대일(66년생) ('18. 9. 20.~ '21. 9. 19.)	강은경(70년생) ('18. 3. 1.~ '21. 2. 28.)	최경란(62년생) ('18. 4. 16.~ '21. 4. 15.)	유광상(54년생) ('18. 9. 27.~ '20. 9. 26.)	김영철(57년생) ('18. 3. 5.~ '21. 3. 4.)	
조직	1실 1센터 1지원단 3본부 1실	2실 4본부 1지원단 1극장 16팀	1본부 4팀 1감사역 1예술단	4본부 1실 1역 2센터 1사무국	1사무국 2부	2국 6팀	
정원내	정원	164명	181명	147명	152명	13명	27명
	현원	164명	161명	131명	116명	10명	25명
정원외	무기	-	-	4명	-	-	1명
	기간제	16명	32명	12명	27명	-	18명
	단시간	0명	-	-	-	-	-
이사	정원	10명	15명	15명	15명	11명	13명
	현원	8명	14명	13명	12명	8명	7명
감사	정원	2명	2명	1명	2명	2명	2명
	현원	1명	1명	1명	2명	2명	1명
'19 예산	본 예산	381억원	699억원	206억원	599억원	119억원	96억
	추경 예산	-	-	-	-	-	-
시출연비	'18(누적액)	2,823억원	2,677억원	1,595억원	1,868억원	1,185억원	127억원
	'19	324억원	501억원	136억원	369억원	111억원	56억원
주요 사업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복지분야 평가·심사 및 인증 복지분야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 교류 및 민간의 협력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지역문화의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공익목적 공연 해외공연 판매공연 (장가공연, 기업공연 등) 문화예술 교육사업 음반 녹음, 발매	디자인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패션봉제산업 육성 디자인기반사업 운영 서울시민디자인 연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서울생활용플라자 운영	대학분야 장학사업 공익인재분야 장학사업 고교/하나고 분야 장학사업 재능분야 장학사업 서울평화희망장학금 기타 지정기탁 장학사업	평생교육진흥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조정 소외계층 평생교육	

구 분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의료재단	기술연구원	관광재단	
설립 목적	-장년층의 은퇴전후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디지털 서울 구현을 위한 혁신그룹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 수행 -디지털 산업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실현	-서울시 보건의료 기관 운영 효율화, 질향상 지속 강화 -서울시 보건의료 기관·자원·분야간 연계협력 강화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 도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시경쟁력 확보	
설립 근거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일	'16. 4. 28.	'16. 5. 25.	'17. 4. 24.	'17. 7. 6.	'18. 3. 27	'18. 4. 23	
대표자 (임기)	김영대(60년생) ('16. 3. 9. ~ '19. 3. 8.)	이치형(64년생) ('16. 6. 1. ~ '19. 5. 31.)	김민영(67년생) ('17. 4. 19. ~ '20. 4. 23.)	이영문(62년생) ('17. 7. 24. ~ '20. 7. 23.)	고인석(59년생) ('18. 10. 10. ~ '21. 10. 9)	이재성(59년생) ('18. 4. 23. ~ '21. 4. 22.)	
조직	1국 1본부 3캠퍼스	1실 1본부 4팀	2본부 12팀	3부 1실	2본부 7실	4본부 1실	
정원내	정원	103명	30명	420명	30명	52명	132명
	현원	91명	26명	406명	24명	29명	57명
정원외	무기	-	-	12명	-	-	-
	기간제	-	4명	-	4명	-	73명
	단시간	-	1명	-	-	-	1명
이사	정원	10명	8명	10명	10명	10명	16명
	현원	10명	8명	9명	10명	8명	9명
감사	정원	2명	2명	1명	2명	2명	2명
	현원	2명	2명	1명	2명	2명	1명
'19 예산	본 예산	153억원	85억원	212억	41억원	126억원	363억
	추경 예산	-	-	-	-	-	-
시출연기관	~'18 (누적액)	305억원	198억원	358억원	65억원	68억원	150억원
	'19	142억원	82억원	201억원	37억원	109억원	361억원
주요 사업	-장년층 인생재설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조사·분석 및 관련 사업개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제공 등	-서울디지털 경제 육성 -디지털산업 지원 -디지털 서울구현 및 디지털 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구경 상담 제공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상담 전문인력 양성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 서비스 발굴 -시장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시장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 운영 및 관리	-싱크탱크로서 정책 연구 및 평가 -서울 공공보건의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 -예방중심 공공보건 의료 구현, 지역사회 건강생태계 조성 -예방중심 공공보건 의료 구현, 지역사회 건강생태계 조성 -보건의료 자원개발 및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도시인프라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재난재해에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연구 -시민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 -미래 선진도시 견인을 위한 혁신 융합 연구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원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인」 검토의견

안건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 발 의 자 : 김종무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조례안 주요 내용

- 정책연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
-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최종 결과물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
- 비공개 가능한 대상의 기준을 명시
- 투자·출연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공개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부서 검토의견 : 수용

- 현재 정책연구용역 관련 조례는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운영 조례」가 있으나, 학술용역심의회 구성·운영과 본청·사업소에서 발주한 학술용역에 대한 심의, 학술용역 점검 및 평가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우리시 전 기관의 용역결과물에 대해 공개의무 규정이 없어 공개실적이 저조하며, 직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의 용역관련 규정도 없는 상황임.
 - 본청, 사업소의 용역결과물은 매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의 권고사항

으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연계하여 시 홈페이지 내 「정보소통광장」 및 행안부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며,

- 투자·출연기관의 용역결과물은 직접 시 홈페이지를 내 「정보소통광장」에 등록하여 공개하고 있음.

- 금번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제정은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시스템 구축·운영, 용역결과물의 공개의무, 비공개 기준설정, 공개실적의 기관평가 반영 등을 강행규정으로 명문화 한 것임.
- 이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중복 수행방지와 용역결과물의 질적 향상, 결과물의 축적·공유 및 활용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됨.

향후계획

- 시 본청·사업소·직속기관, 투자·출연기관에 조례 제정 통보
- 투자·출연기관 용역결과물의 공개여부 기관평가 방안마련(공기업담당관)

작 성 자	조직담당관 : 김선수 ☎2133-6720	시정연구팀장 : 김완신 ☎6740	담당 : 성재연 ☎6746
	공기업담당관 : 고광현 ☎2133-6770	공사공단팀장 : 이재석 ☎6776	담당 : 전인성 ☎6777
	공기업담당관 : 고광현 ☎2133-6770	출자출연팀장 : 박경길 ☎6780	담당 : 고준영 ☎6784